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2회 1차 정례회

# 검토 보고서

2023. 6. 12.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(안)	고병준 의원 외 6명



복지도시위원회  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 
관한 조례(안)”

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고병준 의원 외 6명
- 제안일 : 2023. 5. 23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76)

## 2. 제안이유

-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어르신 복지증진이 주요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어르신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장수축하금 신청안내,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장수축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장수축하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3. 5. 18.~ 5. 23.(제출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어르신 복지증진이 주요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하였고
  - 안 제3조~제4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규정 하였으며
  - 안 제5조~제6조까지는 신청안내 및 지급방법을,
  - 안 제7조~제8조까지는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 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,

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증진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이 존경받고,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.

○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,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 호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부칙 제2조와 관련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축하금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고 자료

## 1. 관련법령

###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 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 2. 향후 100세 어르신 증가 추이

(단위: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100세이상 인구수 (100세 도래자)	51명 (25명)	75명 (24명)	95명 (20명)	144명 (49명)	215명 (71명)
소요 비용	51,000	24,000	20,000	49,000	71,000